

의안번호	제 75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3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발 의 자 : 박상돈, 임영은, 이옥규,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이상욱

1. 제정이유

- 문화재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 2021. 5. 18. ~ 2021. 5. 28.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교육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문화재에 관한 이해증진과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재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
7.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재교육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재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2(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재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재교육
2. 사회문화재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